

더 나은 삶에 대한 믿음 **HDC**

+

감사위원회운영규정

2023. 12. 18.

HDC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감사위원회운영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 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(직무와 권한)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한다.

② 감사위원회는 언제든지 회계에 대한 장부기록과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으며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

③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
④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 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.

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

⑥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⑦ 감사위원회는 회의시 필요한 경우 경영진, 재무담당임원, 내부감사부서의 장이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.

⑧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한다.

⑨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·개정에 대한 승인 및 운영 실태를 평가한다.

⑩ 감사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내 모든 자료, 정보 및 비용에 관한

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⑪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하여야 하며,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.

⑫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11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4조 (구성)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한다.

② 감사위원회 위원 각자는 독립적인 이사이어야 하며,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독립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간섭도 받아서는 안된다.

③ 감사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재무 및 회계 실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, 최소한 한 명은 회계 또는 재무관련 업무에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.

④ 사임·사망 등 사유로 인해 사외이사가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5조 (해임) 위원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

제6조 (위원장) ①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 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이 감사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임시 위원장을 지명하며, 위원장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3장 회 의

제7조 (종류) ① 감사위원회는 정기 감사위원회와 임시 감사위원회로 한다.

② 정기 감사위원회는 각 분기별로 1회 날을 정하여 본사에서 개최하며, 필요한 경우 개최시기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. 단, 제11조의 부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임시 감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제8조 (소집권자) 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단,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소집권자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각 위원은 위원장 또는 그 밖의 소집권자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고 감사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때 위원장은 즉시 감사위원회를 소집한다.

제9조 (소집절차) ① 감사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적어도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개최시기, 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감사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.

제10조 (결의방법) ①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 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②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감사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③ 상법 제393조의2 제4항에 따라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, 해임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 (부의사항) ① 감사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감사에 관한 사항

가. 상법 제412조의2 소정의 이사의 보고에 따른 조치

- 나. 감사록의 작성
- 다. 자회사의 조사에 관한 사항
- 라. 전문가의 조력에 관한 사항
- 마. 외부감사인의 선정 및 해임
- 바.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, 감사시간,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의 제·개정
- 사.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의 제·개정
- 아. 선정된 외부감사인에 대한 사후 평가
- 자.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및 해당 위반사실 조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
- 차.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
- 카. 회사가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
- 타.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계약 체결 승인
- 2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 - 가.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시 이에 따른 안건
 - 나. 감사보고서의 작성·제출 및 주주총회에서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
- 3. 계열회사간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(단, 다음 각 목의 내용 중 상법 제398조(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)에도 해당하는 내부거래는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이사회에서 의결)
 - 가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(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)에 근거한 내부거래
 - 나. 상법 제542조의9(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)에 근거한 내부거래
- 4. 기타 법령에 정하거나 정관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1.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 - 2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

제12조 (의사록) ① 감사위원회는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

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③ 의사록의 사본은 회의후 7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제13조 (감사위원회 위원의 의무) ① 감사위원회 위원은 감사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외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, 회사의 기밀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.

② 감사위원회 위원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 하여야 한다.

제13조의2 (감사의 유형) 감사는 기능별로 경영감사, 업무감사, 재무감사, 준법감사, 정보기술감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13조의3 (감사의 실시) ① 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감사부서장에게 소속 직원의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피감사부서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회사가 회계제도 또는 회계처리의 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 이유 및 변경에 따르는 영향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이사에게 요구한다. 위원회는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이 부당하거나 그 밖에 회계처리 방법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는 감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.

1. 거래기록의 신뢰성
2. 각 계정에 기재된 사실의 정확성
3. 재무제표 표시방법의 타당성
4. 재무제표가 회계기준 및 공정 타당한 회계관행에 준거하였는지 여부
5. 회계방침의 계속성
6.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

④ 위원회는 연결재무제표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.

제13조의4 (내부회계관리제도) 감사위원회는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

제13조의5 (중요 회의에의 출석) ① 감사위원은 경영방침의 결정 경과, 경영 및 업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임원회의 및 그 밖의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② 전항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감사위원은 심의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의사록 및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다.

제14조 (전문가의 조력)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.

제15조 (간사 및 간사조직) ① 감사위원회의 간사는 이사회 부속실내 전담직원으로 한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15조의2 (감사부설기구) ① 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전속되는 감사부설기구를 둔다. 다만, 감사부설기구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부감사부서 등의 인력을 활용하여 감사활동을 할 수 있다.

② 감사부설기구의 책임자와 직원(이하 '내부감사인력'이라 한다.)은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며, 위원회의 지휘·명령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. 다만,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내부감사부서의 인력을 내부감사인력으로 간주한다.

③ 감사부설기구의 책임자 임면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④ 대표이사·이사와 경영진은 위원회 또는 이사회가 감사부설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하여야 한다.

제16조 (규정의 개폐)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